

연구비 감사 주요 지적사례

2023. 2.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

문의처 : 연구감사팀 내선 5874, 5877, 5878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Korea University Research & Business Foundation

목차

제 1 장 연구비 관련 제재조치

- 1. 제재처분 정의 3
- 2. 혁신법에 따른 제재조치 사유 변경 7

제 2 장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례

- 1. 일상감사 지적사례 8
- 2. 종료감사 비목별 지적사례 9
 - 1) 학생인건비 및 인건비 9
 - 2) 연구시설 · 장비비 10
 - 3) 연구재료비 10
 - 4) 연구활동비 11
 - 5) 연구수당 17
 - 6) 위탁연구개발비 18
 - 7) 그 외 지적사례 18

1

연구비 관련 제재조치

1 정의

1. 참여제한이란?

-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이하 ‘혁신법’) 제32조 제1항)

2. 제재부가금이란?

- 제재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 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혁신법 제32조 제1항)

3. 회수란?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실시되는 정산결과 아래와 같은 금액을 회수하는 것(혁신법 제13조 제7항, 시행령 제26조 제5항 각호)

1. 직접비 사용 잔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함)
2. 정산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간접비 총액} \times (\text{간접비 집행비율} - \text{직접비 집행비율})$$

4.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4. 연구개발비 환수란?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음 (혁신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59조 제3항)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 저해행위란?

-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증명 자료의 위조·변조,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를 의미함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혁신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6. 부정행위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곧 제재사유임
-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p>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p> <p>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p> <p>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p> <p>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p> <p>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 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p>
<p>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p>
<p>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성과소유위반</p>

<p>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 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p>	<p>보안대책 위반, 국내외 유출</p>
<p>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p>	<p>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수행</p>
<p>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1.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p> <p>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보고</p> <p>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p> <p>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p>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 변경

【종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호		【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시행)	
1호	연구결과 불량	1호	과정결과 불량
8호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8호	협약불이행 및 변경, 중단
		<제31조 제1항 각호(부정행위')>	
5호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3호	1 위조·변조·표절
6호	지식재산권의 개인명의 출원 및 등록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2호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	3	성과소유 위반
		보안대책 위반	
7호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	4호	4 국내 누설유출
			4호
		5호	5 부정행위
			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호	① 조사방해행위
			②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행위
			③ 생명윤리 위반
			④ 연구실 안전 위반
3호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4호	포기
4호	기술료 미납	5호	기술료 미납
		6호	회수금 미납
4의2호	환수금 미납		

1 「기본법」 체계에서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명명하였으나, 「혁신법」에서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위반, 성과소유원칙 위반 등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전체를 '부정행위'로 명명

2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례

1 | 일상감사 지적사례

1. 300만원 이상 연구재료비 중앙구매 미이행

- 지적사항 : 3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비를 연구실에서 자체구매를 하거나, 동일 업체에서 동일날짜에 연구재료비를 300만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 (중앙구매 기준) ① 항 3호 연구재료, 제4조의 2(자체구매 기준) ①항 4호 300만원 미만의 연구재료

2. 2천만원 초과 연구용역 중앙구매 미이행

- 지적사항 : 2천만원 초과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중앙구매를 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미이행하고 연구책임자와 업체 간 계약을 실시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 (중앙구매 기준) ① 산학협력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은 중앙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용역

제4조의2(자체구매 기준) ①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은 자체 구매할 수 있다.

5. 2천만원 이하로 제34조 해당하는 연구용역

「고려대학교 용역계약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입찰) ① 추정금액이 2,000만원 초과 건은 입찰에 부쳐야 한다.

3.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퍼센트 초과하여 집행

- 지적사항 : 당해연도 연구수당 집행 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초과하여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 (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종료감사 비목별 지적사례

1. 학생인건비 및 인건비

- 지적사항 : 타 대학 석사과정 연구원 계상률을 본교 계상기준인 210만원으로 오입력하여 외부인건비가 과다 집행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지적사항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취업자는 학생연구원으로 연구개발 참여가 불가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학생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취업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 지적사항 :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미참여연구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 연구시설·장비비

- 지적사항 : 단계기간 외 임차사용료를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지적사항 : 2천만원 초과 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중앙구매를 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미이행하고 연구책임자와 업체 간 계약을 실시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중앙구매 기준) ① 산학 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은 중앙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계기구, 집기비품

- 지적사항 : 100만원 이하의 연구물품의 경우 자체구매 및 물품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나 해당 절차가 누락됨 (물품등록 절차란 구매시스템을 통해 자체구매 물품에 대한 검수 및 자산등록을 거치는 절차임)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의2(자체구매 기준)

- ② 제1항의 사유로 연구용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을 구매한 연구자는 물품등록 절차를 거친 후, 연구비에서 해당 구입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연구재료비

- 지적사항 : 단일구매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00만원 이상의 연구재료 구매 시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음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연구물품·연구용역 구매 및 관리 규정」 제4조(중앙구매 기준) ① 산학 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은 중앙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재료

4. 연구활동비

(1) 외부기술전문활동비

- 지적사항 : 단계정산 시 외부기술전문활동비는 직접비(현물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이내 사용이 가능하나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동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2. 전문가활동비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지적사항 : 전문가활동비(자문료) 지급 시 교내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집행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② 국내외 전문가 활동비

[자문료 지급기준]

구분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비고
	장기자문료 (일기본급)	단기자문료 (시간기본급)	장기자문료 (월기본급)	단기자문료 (일기본급)	
A급	300,000원/일 이하	150,000원/시간 이하	\$ 6,000/월 이하	\$ 300/일 이하	제세포함
B급	250,000원/일 이하	100,000원/시간 이하	\$ 4,000/월 이하	\$ 250/일 이하	제세포함

(2) 회의비

- 지적사항 : 회의비 집행 시 유휴주점 사용 혹은 영수증 내 주류가 포함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류 등 유휴성 비용

- 지적사항 :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회의비를 집행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다) 회의비

- 회의비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는 집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연구비지원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 지적사항 : 1인당 회의비 지급기준은 3만원이나 이를 초과하여 집행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다) 회의비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회의식비(다과비 포함)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원기관의 회의식비(다과비 포함)와 관련한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따른다.

구분	회의식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	<u>30,000원</u>

- 지적사항 : 자택 근처에서 배달 앱을 통해 결제하고 연구수행과 관계없는 회의비로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3) 국내·외 출장비

- 지적사항 : 여비 지급 시 학회에서 제공되는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비(식비)를 차감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여비(식비)를 중복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계상기준)

- ⑥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 지적사항 : 참여연구자(공동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본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계상기준)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지적사항 : 본교 소속 연구참여자는 고려대학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국외 여비는 별표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지역 등급을 오적용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제5조(여비의 지급구분)

- ① 본교 교직원의 여비는 별표1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명시된 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 지적사항 : 이동 중 기내에서 숙박하는 항공여행의 경우 숙박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집행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 여비규정」 제7조 (일비, 식비 및 숙박비의 지급)

- ③ 국외 여비는 별표2의 기준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이동 중 기내 및 선박에서 숙박하는 항공여행과 선박여행에는 숙박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4) 소프트웨어활용비

- 지적사항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사용계약기간을 최소단위로 체결하여야 하나 1년 사용계약기간으로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5) 연구실운영비

- 지적사항 : 사무용품 집행금액 중 개인용품이 다수 집행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지적사항 :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비용이 아닌 다량의 생수를 구입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사) 연구실 운영비

- 대학 연구실의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제습기, 이동식 서큘레이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소독용품, 책상, 의자, 캐비닛, 수납장, 책장, 파티션 등이다.

(6) 연구인력지원비

- 지적사항 : 과제 미참여연구원의 학회등록비, 연회비 등을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 지적사항 : 본교에서 운영하는 시설 대관료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내부거래)으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지적사항 : 야근 식대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초과근무 시 집행한 금액을 인정하나 야근시간 이전에 식대를 집행함 (18시 이전 집행 건)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아) 연구인력지원비

- 식대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초과근무 시 집행한 식사비용으로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야근 특근 대상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

- 지적사항 : 1인당 야근 식대의 지급기준은 3만원이나 이를 초과하여 집행함

◆ 관련 근거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아) 연구인력 지원비

-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야근식비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야근식대
1인당 지급기준	30,000원

※ 야근식대는 카드 사용분만 인정함 <개정 2021.12.01.>

(7) 그 밖의 비용

지적사항 : 연구와 관련없는 학위논문에 대한 인쇄물 및 제본비를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 · 복사 ·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5. 연구수당

- 지적사항 : 연구수당 지급액은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나 초과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사용용도)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적사항 : 단계종료 과제에서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 대비 2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사용용도)

-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연구수당 지급액} \times (\text{연구수당지급비율} - \text{직접비사용비율} - 20/100)$$

- 지적사항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으나,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집행함

◆ 관련 근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 제116조제1항 연구수당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위탁연구개발비

- 지적사항 :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정산후 부가세를 반납하여야하나 미반납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7. 그 외 지적 사례

- 지적사항 : 구급함 및 실험복의 경우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직접비로 집행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